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6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김성원・임이자・김선교

김위상 · 송석준 · 김종양

고동진 • 박충권 • 김소희

조승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가 국가 안보의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55명이던 여군의 출산율은 2021년 1.14명까지 하락하였으며, 전방·격오지 근무와 비상대기 등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의 출산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함께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 증진과 출산 지원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이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의 이용 지원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

관을 명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하고,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 는 것임(안 제15조의17). 법률 제 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7제2항 중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
조리원 설치) ① (생 략)	조리원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②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	
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u>이용</u>	, 이용
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군인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u>의</u>
령으로 정한다.	